



교직과정 운영규정

[시행 2024.3.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과)와 사범학부의 교직과정 운영과 교직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직과정”이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2. “기본이수과목”이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기본과목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을 말한다.
3. “표시과목”이란 교원자격증에 명시하는 담당과목을 말한다.

제3조(교직과정 설치 전공(과) 및 승인인원)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과) 및 승인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자격증의 수여와 취소) ① 교직과정을 이수(사범학부 포함)하고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

② 교직과정이수예정자(사범학부 포함)가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사범학부 포함)을 복수로 전공하고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

③ 자격증 수여자가 교원자격증의 대여·알선 등의 행위를 한 내용에 대해 충남교육감에게 해당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3.4.>

④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 4조에 의하여 충남교육감은 해당자에게 자격취소 처분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24.3.4.>

제5조(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자격증의 신규 교부 및 재교부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3.4.18.>



제2장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및 이수 확정

제7조(교직과정 이수자격 및 신청) ①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과)의 학생에 한한다.

②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소정의 기간 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5.>

③ 특수교육과로 입학한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말 소정의 기간 내에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또는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영어에서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학년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또는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영어를 복수로 취득할 경우에는 2학년 중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이 경우 복수전공 이수인원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 2022.9.1.>

제8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1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과 면접, 적인성검사를 통하여 선발한다. 단, 교직이수 신청자가 선발정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추가로 이수신청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② 교직과정 이수신청자의 교직적성을 판단하기 위한 면접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과)별로 실시하며 면접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고 동일 전공(과)은 동일한 면접위원이 실시한다.

③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성적 50%, 면접점수 40%, 적인성검사 10%를 합한 총점 순으로 선발하며,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학점수, 취득과목수 순으로 선발한다.

제9조(편입생의 교직과정 이수) ① 편입생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1. 전적 대학에서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2. 전적 대학과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전공(과)에 편입학을 한 자. 단, 동 규정 제3조로 정한 승인인원에 결원이 있어야 한다.

② 위 조건이 충족된 편입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초 사범학부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8.>

③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과)에 편입학한 자는 승인인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제10조(이수학점)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학부 포함)가 취득해야 할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II. 학 사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 가.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포함)
 - 나. 교직과목: [별표 2]로 정한 10과목 20학점. 단, 전문상담교사(2급)는 “교직이론영역” 7과목(14학점)과 “교육실습영역” 1과목(2학점)만 이수하고,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 2과목(4학점)만 이수함
 - 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학부 제외)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100점 이상
2.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까지(2011학년도~2014학년도 편입자 포함)
 - 가.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단, 특수학교의 경우 전공과목은 80학점 이상이며 특수교육(공통) 42학점과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8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포함하여야 하고 15학점 이내에 중복학점 인정 가능함 단, 특수(중등)에서 체육 이외의 과목은 중복학점 인정 불가
 - 나.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 다.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3.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 2022학년도 편입자 포함) <개정 2024.1.2.>
 - 가.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단, 특수학교의 경우 전공과목은 80학점 이상으로 특수교육(공통) 42학점과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8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을 포함하여야 하고 15학점 이내에 중복학점 인정 가능함 단, 특수(중등)에서 체육 이외의 과목은 중복학점 인정 불가
 - 나.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 다.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4. 2021학년도 ~ 2022학년도 입학자(2023학년도 ~ 2024학년도 편입자 포함) <신설 2021.8.5.> <개정 2024.1.2.>
 - 가.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단, 특수학교의 경우 전공과목은 80학점 이상으로 특수교육(공통) 42학점(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과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8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단 특수(중등)의 경우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특수교육교육과정 3과목 7학점 이상 포함)을 포함하여야



하고 18학점 이내에 중복학점 인정 가능함 단, 특수(중등)에서 체육 이외의 과목은 중복학점 인정 불가

나.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다.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5.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202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신설 2024.1.2.>

가.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단, 특수학교의 경우 전공과목은 80학점 이상으로 특수교육(공통) 42학점(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과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8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단 특수(중등)의 경우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특수교육교육과정 3과목 7학점 이상 포함)을 포함하여야 하고 18학점 이내에 중복학점 인정 가능함 단, 특수(중등)에서 체육 이외의 과목은 중복학점 인정 불가

나. 교직과목: 23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4과목 7학점, 교육실습 4학점)

다.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② 특수교육과 주·복수전공자가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또는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영어를 복수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이수해야 할 학점 및 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1.>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가. 특수교육(공통)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포함)

나. 초등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포함)

다. 중등(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포함)

라. 교직과목: [별표 2]로 정한 10과목 20학점 및 교과교육영역(중등 표시과목) 2과목 4학점 추가

마.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학부 제외)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100점 이상

2.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까지(2011학년도~2014학년도 편입자 포함)

가. 특수교육(공통)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포함)

나. 초등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및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포함)

다. 중등(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및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포함)

II

학

사

- 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 마.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3.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 가. 특수교육(공통)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포함)
 - 나. 초등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및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포함)
 - 다. 중등(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및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포함)
 - 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 마.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4.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2023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신설 2021.8.5.>
 - 가. 특수교육(공통)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포함,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 나. 초등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및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포함)
 - 다. 중등(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및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특수교육교육과정 3과목 7학점 이상)
 - 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 마.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③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기본이수과목)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과목은 매학년도 교육과정에 명시한다.

1. 1999학년도 사범학부 입학자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9학점 이상
2.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5과목 14학점 이상
3.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7과목 21학점 이상

제3장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및 이수

제12조(이수자격 및 이수가능 전공) ① 본 규정이 정하는 교직 복수전공 이수 자격은



교직과정이수예정자(사범학부 포함)로 한다.

② 교직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한 전공(과)은 사범학부 전 학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공(과)으로 한다.

제13조(신청 및 선발) ① 교원자격증 복수전공 이수신청서는 2학년 1학기 말(편입생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말)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신청시기는 3학년 1학기 말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이수예정자의 선발에 있어서 신청인원이 선발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 선발 할 수 있다.

제14조(이수학점 및 성적)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가 취득해야 할 학점 및 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가.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포함)

나. 교직과목: [별표 2]의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2과목(4학점). 단, 전문상담 교사(2급)는 해당 없음

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학부 제외)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이며, 사범학부 학생이 교직과정 설치전공(과)을 복수전공 할 경우에는 2005학년도 제2학기부터 이수한 과목에 한하여 복수전공(과)의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함

2.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까지(2011학년도~2014학년도 편입자 포함)

가.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단, 특수학교의 경우 전공과목은 80학점 이상으로 특수교육(공통) 42학점과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8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포함하여야 하고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이 동일한 경우 상호 인정할 수 있으며, 15학점 이내에 중복학점 인정 가능함 단, 특수(중등)에서 체육 이외의 과목은 중복학점 인정 불가

나.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3.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가.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0학점 이상으로 특수교육(공통) 42학점과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8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포함하여야 하고,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이 동일한 경우 상호 인정할 수 있으며, 15학점 이내에 중복학점 인정 가능함 단, 특수(중등)에서 체육 이외의 과목은 중복학점 인정 불가

- 나.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및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4.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2023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신설 2021.8.5>
- 가.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0학점 이상으로 특수교육(공통) 42학점(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과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8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단 특수(중등)은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특수교육교육과정 3과목 7학점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이 동일한 경우 상호 인정할 수 있으며, 18학점 이내에 중복학점 인정 가능함 단, 특수(중등)에서 체육 이외의 과목은 중복학점 인정 불가
- 나.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및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제15조(이수인원의 제한) ①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편입자 포함)의 복수(부)전공 이수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범학부: 입학정원의 100% 이내
 2. 교직과정 설치전공(과): 승인인원 이내
- ②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편입자 포함)의 복수(부)전공 이수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범학부: 입학정원의 100% 이내
 2. 교직과정 설치전공(과): [별표1]의 교직과정 설치 승인전공(과) 및 승인인원의 2배수 이내

제4장 교육실습

제16조(교육실습) 교직과정이수예정자(사범학부 포함)는 졸업학년도 이내에 교육실습 과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교육실습 1과목 2학점(4주 이상)
2.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4주 이상) 및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60시간 이상)

제17조(복수전공자 및 편입자의 교육실습) ①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의 교육실습은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 ② 편입자 중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편입한 전공의 표시과목에 맞는 교육실습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9.15.>



제18조(실습경비)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교육봉사활동) ① 2009학년도 이후에 입학(2011학년도 이후 편입 포함)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학부 포함)는 교육봉사활동(2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봉사활동 이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범학부: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개정 2024.1.2.>
2. 교직과정 설치전공: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개정 2024.1.2.>

② 총 60시간의 봉사활동 후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봉사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의 봉사실적은 상호 중복인정 받을 수 없으며, 1일 최대 8시간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제5장 교원양성위원회

제20조(목적) 교직과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대한 검정 실시
2. 대학이 정하는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 마련: 인성검사, 적성검사, 면접 등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교직 복수전공·부전공 이수예정자의 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교원양성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양성에 관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사범학부장·교직과정 설치전공 학부장, 교무처 학사업무담당팀장을 포함한 교직관련 교원 및 외부인사(졸업생 우선 위촉)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3.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2인 이상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무시험검정

제29조(무시험검정 대상) 사범학부 또는 교직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한다.

제30조(무시험검정 신청) 무시험검정 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를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은 서류심사로 한다.

② 무시험검정의 합격기준은 학위를 취득한 자(복수전공 포함)로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 의한 과목과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주전공의 무시험자격검정에서 불합격된 자는 복수전공의 무시험자격검정도 불합격 처리된다.

제32조(제출서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2. 마약류검사 결과서 <개정 2024.1.2.>
3.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편입생에 한함) <개정 2024.1.2.>

제7장 교직과정 운영

제33조(교직과정 운영) ① 교직과정 운영관련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1.2., 2024.3.4.>

②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재학생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2024.3.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교직과정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교직과정 운영 규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Ⅱ

학

사

II. 학 사

[별표 1]

교직과정 설치승인 전공(과) 및 승인인원

1. 일반학부 <개정 2022.9.1.>

대 상 학 부		자 격 종 별	적용연도	입학정원	승인인원	비 고
학 부	전 공					
기독교학부	신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종교	1996학년부터	60	20	
			2006학년부터	40	12	
			2008학년부터	40	4	
			2012학년부터	40	3	
			2016학년부터	40	2	
			2022학년부터	—	2	
	선교학		1996학년부터	60	20	
			2006학년부터	20	6	
			2008학년부터	20	2	
	미디어선교학		2018학년부터	—	—	
			2018학년부터	20	2	
			2022학년부터	—	1	
	기독교교육학		2023학년부터	—	—	
			1996학년부터	60	20	
			2006학년부터	50	15	
			2008학년부터	50	5	
			2022학년부터	—	2	
2023학년부터	—	—				
기독교상담학	2004학년부터	80	24			
	2005학년부터	100	30			
	2006학년부터	80	24			
	2008학년부터	80	8			
	2022학년부터	—	8			
상담학		2023학년부터	—	8		
어문학부	일본어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본어	2005학년부터	80	8	
			2006학년부터	120	12	
			2012학년부터	120	11	
			2015학년부터	100	10	
			2016학년부터	80	8	
			2018학년부터	50	5	
			2022학년부터	—	3	
	2023학년부터		—	—		
	중국어학		1999학년부터	60	6	
			2002학년부터	100	10	
			2003학년부터	140	14	
			2012학년부터	140	13	
			2015학년부터	130	13	
			2018학년부터	80	8	
2022학년부터		—	4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학	유치원 정교사(2급)	1998학년부터	60	18	
			2008학년부터	60	6	
			2022학년부터	—	2	
	청소년학	전문상담교사 (2급)	2004학년부터	60	18	
			2005학년부터	80	24	
			2008학년부터	80	8	



대 상 학 부		자 격 종 별	적용연도	입학정원	승인인원	비 고
학 부	전 공					
관광학부	관광경영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관광	2006학년부터	80	8	
			2012학년부터	80	4	
			2018학년부터	—	—	
	호텔경영학		2006학년부터	130	13	
			2012학년부터	130	5	
			2018학년부터	—	—	
	관광통역		2006학년부터	30	3	
			2012학년부터	30	2	
			2015학년부터	—	—	
디자인영상학부	시각정보디자인	중등학교 정교사(2급) 디자인·공예	2008학년부터	73	7	
			2012학년부터	70	7	
			2017학년부터	—	—	
	산업디자인		2008학년부터	73	7	
			2012학년부터	70	5	
			2017학년부터	—	—	
	영상애니메이션		2008학년부터	73	7	
			2012학년부터	70	5	
			2017학년부터	—	—	
	인테리어디자인		2009학년부터	70	7	
			2012학년부터	70	5	
			2017학년부터	—	—	
	공예디자인		2009학년부터	30	3	
			2012학년부터	30	2	
			2015학년부터	—	—	
디자인영상학부	시각디자인	중등학교 정교사(2급) 디자인	2017학년부터	70	7	
			2022학년부터	—	3	
			2023학년부터	—	—	
	산업디자인		2017학년부터	70	5	
			2018학년부터	40	4	
			2023학년부터	—	—	
	영상애니메이션		2017학년부터	70	5	
			2018학년부터	30	3	
			2023학년부터	—	—	
	인테리어디자인		2017학년부터	70	5	
			2018학년부터	40	4	
			2022학년부터	—	3	
2023학년부터		—	—			

2. 사범학부 <개정 2022.9.1., 2023.4.18.>

대 상 학 부		자 격 종 별	승인인원	적용연도	비고
학부	과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유치원 정교사(2급)	입학생 전원	1999학년부터	
	특수교육과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1999학년부터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종교, 관광, 디자인·공예		2017학년부터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종교, 디자인		2022학년부터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 국어, 영어		2025학년부터	
	유아특수교육과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2001학년부터	
	특수체육교육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2004학년부터	

II. 학 사

[별표 2] <개정 2024.1.2.>

교직과목 일람표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영역	과목	학점	비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총 8과목 중 7과목 / 14학점 이상 이수
	교육심리	2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사회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사론	2	
교과교육	교과교육론	2	2과목 / 4학점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2	
교육실습	교육실습	2	4주
합계	11과목 / 22학점		

※ 전문상담교사(2급)는 교과교육영역(2과목)을 제외하고 8과목(16학점) 이상을 이수함.

2.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까지(2011학년도~2014학년도 편입자 포함)

영역	과목	학점	비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총 9과목 중 7과목 / 14학점 이상 이수
	교육심리	2	
	교육과정	2	
	교육평가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사회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사론	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2과목 / 4학점
	교직실무	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	4주
	교육봉사활동	2	60시간
합계	12과목 / 24학점		

※ ‘특수교육학개론’ 대체 인정

-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전공과목인 ‘특수교육학’ 또는 ‘특수교육개론’을 이수하여 ‘특수교육학개론’로 대체 인정
- 유아교육과, 아동복지학전공: 전공과목인 ‘특수아동지도’를 이수하여 ‘특수교육학개론’으로 대체 인정
- 위 사항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 적용하며 대체 인정된 전공과목은 전공이수학점에 포함할 수 없음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과목 이수자는 ‘교육과정’ 또는 ‘교육평가’ 교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음



3. 2013학년도 ~ 2022학년도 입학자(2015학년도 ~ 2024학년도 편입자 포함)

영역	과목	학점	비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총 9과목 중 6과목 / 12학점 이상 이수
	교육심리	2	
	교육과정	2	
	교육평가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사회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사론	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 개론	2	3과목 / 6학점
	교직실무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	4주
	교육봉사활동	2	60시간
합계	13과목 / 26학점		

※ '특수교육학개론' 대체 인정

-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전공과목인 '특수교육학' 또는 '특수교육개론'을 이수하여 '특수교육학 개론'으로 대체 인정
- 유아교육과, 아동복지학전공: 전공과목인 '특수아동지도'를 이수하여 '특수교육학 개론'으로 대체 인정
- 위 사항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 적용하며 대체 인정된 전공과목은 전공이수학점에 포함할 수 없음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과목 이수자는 '교육과정' 또는 '교육평가' 교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음

4.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202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영역	과목	학점	비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총 9과목 중 6과목 / 12학점 이상 이수
	교육심리	2	
	교육과정	2	
	교육평가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사회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사론	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 개론	2	4과목 / 7학점
	교직실무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2	
교육실습	디지털교육	1	4주
	학교현장실습	2	
	교육봉사활동	2	60시간
합계	13과목 / 26학점		

※ '특수교육학개론' 대체 인정

-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전공과목인 '특수교육학' 또는 '특수교육개론'을 이수하여 '특수교육학 개론'으로 대체 인정
- 유아교육과, 아동복지학전공: 전공과목인 '특수아동지도'를 이수하여 '특수교육학 개론'으로 대체 인정
- 위 사항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 적용하며 대체 인정된 전공과목은 전공이수학점에 포함할 수 없음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과목 이수자는 '교육과정' 또는 '교육평가' 교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음



Ⅱ. 학 사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3.4.18.〉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3.4.18.〉



[별표 3] <개정 2022.9.1., 2024.01.02.>

교원자격종별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표

1. 주전공자(단수) 기준

자격종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유치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10과목 20학점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특수학교 정교사(2급)	-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10과목 20학점	- 전공과목: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 관련 전공: 42학점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8학점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 전공과목: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 관련 전공: 42학점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8학점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전문상담교사 (2급)	-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8과목 16학점 (교과교육영역 2과목 4학점 제외)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성적 기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학부 제외)는 전공과목과 교직 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100점 이상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교직적성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017년 2월 졸업자까지: 1회 이상	2017년 8월 졸업자부터: 2회 이상

II

학

사

II. 학 사

자격종별		2016학년도~2020학년도 입학자 (2018학년도~2022학년도 편입자 포함)	2021학년도~2022학년도 입학자 (2023학년도~2024학년도 편입자 포함)
유치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특수학교 정교사(2급)	- 전공과목: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 관련 전공: 42학점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8학점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 전공과목: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포함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유치원/초등):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중등):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3과목 7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전문상담교사 (2급)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성적 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교직적성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017년 8월 졸업자부터: 2회 이상	2회 이상
	성인지교육	2021년 2월 9일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자부터 적용, 2021년2월9일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 사범학부: 4회이상 - 교직과정 이수자: 2회 이상
	결격사유확인	- 성범죄경력 미해당자 - 마약류중독 미해당자	- 성범죄경력 미해당자 - 마약류중독 미해당자



자격종별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5학년도 이후 편입자 및 2023학년도 이후 교직이수 선발자 포함)	비고
유치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4과목 7학점, 교육실습 4학점)	
특수학교 정교사(2급)		- 전공과목: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포함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유치원/초등):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중등):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3과목 7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4과목 7학점, 교육실습 4학점)	18학점 이하에 중복학점 인정 가능 단, 특수(중등)에서 체육이외의 과목은 중복학점 인정 불가
전문상담교사 (2급)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4과목 7학점, 교육실습 4학점)	
성적 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교직적성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 사범학부: 4회 이상 - 교직과정 이수자: 2회 이상	교원양성기관 - 3년 이하: 2회 - 3년 이상(편입생 포함): 4회
	결격사유 확인	- 성범죄경력 미해당자 - 마약류중독 미해당자	조희 기준일 2022.6.29.이후

II

학

사

II. 학 사

2. 복수(다중)전공자 기준

자격종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20학년도 입학자 (2023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유치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과목 4학점(교과교육영역)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특수학교 정교사(2급)	- 전공과목: 72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관련전공: 42학점 이상 포함(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0학점 이상 포함(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포함) - 교직과목: 2과목 4학점(교과교육영역)	- 전공과목: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관련전공: 42학점 이상 포함(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8학점 이상 포함(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전공과목: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관련전공: 42학점 이상 포함(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8학점 이상 포함(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전문상담교사 (2급)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성적 기준	- 교직과정 수예정자(사범학부 제외)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 - 사범학부 학생이 교직과정 설치 전공(과)을 복수전공 할 경우에는 2005학년도 제2학기부터 이수한 과목에 한하여 복수전공(과)의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자격종별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3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비고
유치원정교사(2급)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특수학교 정교사(2급)	○전공과목: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 관련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포함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유치원/초등):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중등):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3과목 7학점 이상 포함	18학점 이하에 중복학점 인정 가능 단, 특수(중등)에서 체육이외의 과목은 중복학점 인정 불가
전문상담교사 (2급)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성적 기준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특수학교는 표시과목 또는 학교급별이 동일한 경우 상호 인정 가능

3. 특수교육과 복수취득자 기준

- 특수학교(초등), 특수학교(중등) 국어, 영어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20학년도 입학자 (2023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특수 (초등)	○전공: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특수교 육) ○초등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 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교직: 20학점	○특수교육(공통): 42학점 이상(기본 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초등관련: 38학점 이상(기본이수 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교 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 함) ○교직: 22학점 ○성적: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 점 이상	○특수교육(공통): 42학점 이상(기본 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초등관련: 38학점 이상(기본이수 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교 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 함) ○교직: 22학점 ○성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 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특수 (중등)	○표시과목관련: 30학점 이상(기본 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교직: 4학점(교과교육영역)	○표시과목관련: 38학점 이상(기본 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성적: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 점 이상	○표시과목관련: 38학점 이상(기본 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성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 점 이상
계	총 126학점 (중복 15학점 인정 시 111학점)	총 140학점 (중복 15학점 인정 시 125학점)	총 140학점 (중복 15학점 인정 시 125학점)

II. 학 사

구분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3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비고
특수 (초등)	- 특수교육(공통)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이상 포함 - 초등관련: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 22학점 - 성적: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중복학점 18학점 이하 인정
특수 (중등)	- 표시과목관련: 38학점 이상 (중등):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7 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 과(군)) 3과목 7학점 이상 포함 - 성적: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중복학점 불인정
계	총 140학점 (중복 18학점 인정 시 122학점)	

4. 성적환산 기준

－ 환산점수 기준표

성 적	환산점수 (100점)	성 적	환산점수 (100점)
A+	97.5	C+	77
A	92	C	72
B+	87	D+	67
B	82	D	62
		F	0

－ 100점 환산평균 계산

$$\text{환산평균} = \frac{\sum(\text{과목별 취득성적의 환산점수} \times \text{과목별 학점수})}{\text{수강신청 총 학점수}}$$

※ Pass/Fail 과목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별표 4] 〈신설 2024.1.2.〉

교직과정 운영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표

구분	내용																																																																																																																																																																						
교직과정 운영 관련 사무분 장	1. 교직과정 운영 가.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선발 및 등록 나. 교직과정 이수 방법 안내 및 수강지도 다. 교직 적성·인성 검사 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 외 필수이수요건 운영 마. 교원양성위원회 2. 교원자격증 발급 업무 가. 교원자격 사정 및 수강지도 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및 자격증 발급 다. 교원자격증 재발급 3.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가. 역량진단 계획 수립 나. 자체진단준비위원회 운영 4. 기타 교직 제반 업무																																																																																																																																																																						
교직과정 운영 관련 위임 전결 사항표	<table><tr><th rowspan="2">업무명 및 세부 업무명</th><th rowspan="2">총장</th><th colspan="6">전결권자</th></tr><tr><th>위원장</th><th>총괄 부총장</th><th>학사 부총장</th><th>교무 처장</th><th>학부장</th><th>주임 교수</th></tr><tr><td>1. 교직과정 운영</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가. 교직과정 이수자 신청자 선발 및 등록</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나. 교직과정 이수 방법 안내</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다. 교직과정 수강지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라. 교육봉사활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마. 교원자격 무시험검정</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바.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학점 외 필수 이수요건 운영</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사. 교원양성위원회</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2. 교원자격증 관리</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가. 교직과정 신규 신청 및 폐지</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나. 교원자격증 발급</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다. 교원자격증 재발급</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3.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가. 역량진단 계획 수립</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나. 자체진단위원회 운영</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4. 기타</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가. 교직과정운영규정 개정</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나. 교원양성위원회 운영</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다. 기타 교직과정운영 관련 제반 업무</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업무명 및 세부 업무명	총장	전결권자						위원장	총괄 부총장	학사 부총장	교무 처장	학부장	주임 교수	1. 교직과정 운영								가. 교직과정 이수자 신청자 선발 및 등록						○		나. 교직과정 이수 방법 안내							○	다. 교직과정 수강지도							○	라. 교육봉사활동						○		마.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		바.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학점 외 필수 이수요건 운영						○		사. 교원양성위원회					○			2. 교원자격증 관리								가. 교직과정 신규 신청 및 폐지				○				나. 교원자격증 발급						○		다. 교원자격증 재발급							○	3.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가. 역량진단 계획 수립	○							나. 자체진단위원회 운영						○		4. 기타								가. 교직과정운영규정 개정				○				나. 교원양성위원회 운영					○			다. 기타 교직과정운영 관련 제반 업무						○	
업무명 및 세부 업무명	총장			전결권자																																																																																																																																																																			
		위원장	총괄 부총장	학사 부총장	교무 처장	학부장	주임 교수																																																																																																																																																																
1. 교직과정 운영																																																																																																																																																																							
가. 교직과정 이수자 신청자 선발 및 등록						○																																																																																																																																																																	
나. 교직과정 이수 방법 안내							○																																																																																																																																																																
다. 교직과정 수강지도							○																																																																																																																																																																
라. 교육봉사활동						○																																																																																																																																																																	
마.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																																																																																																																																																																	
바.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학점 외 필수 이수요건 운영						○																																																																																																																																																																	
사. 교원양성위원회					○																																																																																																																																																																		
2. 교원자격증 관리																																																																																																																																																																							
가. 교직과정 신규 신청 및 폐지				○																																																																																																																																																																			
나. 교원자격증 발급						○																																																																																																																																																																	
다. 교원자격증 재발급							○																																																																																																																																																																
3.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가. 역량진단 계획 수립	○																																																																																																																																																																						
나. 자체진단위원회 운영						○																																																																																																																																																																	
4. 기타																																																																																																																																																																							
가. 교직과정운영규정 개정				○																																																																																																																																																																			
나. 교원양성위원회 운영					○																																																																																																																																																																		
다. 기타 교직과정운영 관련 제반 업무						○																																																																																																																																																																	

Ⅱ

학

사